

사이버사고 보상보험

2024년 4월 1일부터 적용

가입 감사의 글

삼성화재 보험상품에 가입해 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삼성화재는 국내 최고를 넘어 글로벌 초일류 보험회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 가장 먼저 갖춰야 할 덕목은 고객만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 삼성화재는 고객님의 보험 상품을 가입하신 이후에도 더 큰 만족을 느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님의 선택에 성실히 보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고객님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에 대한 고객 권리 안내문

1. 금융서비스 이용 범위

- 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여부 판단 목적 및 고객이 동의한 목적만으로 이용됩니다.
- 나. 고객은 영업장·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1) 회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이하 '본인정보')를 제휴·부가서비스 등을 위해 제휴 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 및 2) 당해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소개 및 구매 권유(이하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동의를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제휴·부가서비스 및 신상품·서비스 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고객 권리

- 가.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사실 통보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5 조에 따라 회사가 본인정보를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는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조회 방법
o 인터넷 : <http://www.samsungfire.com>
- 나. 금융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 고지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6 조에 따라 회사가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연체정보 등에 근거하여 금융거래를 거절·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거절·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동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주소·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다.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마케팅 목적의 전화 등의 중단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7 조에 따라 가입 신청 시 동의를 한 경우에도 본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 및 당해 회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전체 또는 사안별로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전국은행연합회 또는 신용조회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 신청방법

- o 서 면 : 본사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74 길 14) 또는 각 영업점
- o 전 화 : 1588-5114
- o 인터넷 : <http://www.samsungfire.com>

- 다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해당 신용정보주체와 약정한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객이 동의를 철회하려면 그 용역의 제공을 받지 아니할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마케팅 목적의 연락 중지는 즉시 가능)

라. 본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8 조에 따라 회사가 보유한 본인정보에 대해 열람 청구가 가능하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o 서 면 : 본사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74 길 14) 또는 각 영업점
- o 전 화 : 1588-5114
- o 인터넷 : <http://www.samsungfire.com>

마. 본인정보의 무료 열람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9 조에 따라 본인정보를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연간 일정 범위 내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신용조회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NICE 신용정보(주) : ☎ 02-2122-4000 인터넷 www.nice.co.kr
- 서울신용평가정보(주) : ☎ 02-3445-5000 인터넷 www.sci.co.kr
- 코리아크레딧뷰로(주) : ☎ 02-708-6000 인터넷 www.kcb4u.com

3. 개인정보 유출 시 피해 보상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로 고객님의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위의 권리 행사와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애로가 있으신 경우 아래의 담당자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당사 고객정보 관리·보호 고충처리자
: 02-758-4045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74 길 14
 - 협회 개인신용정보 보호담당자
: 02-3702-8500 / 서울시 종로구 종로 5 길 68
 - 금융감독원 개인신용정보 보호담당자
: (국번없이) 1332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사이버사고보상보험

[목 차]

보통약관	4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5
제1조(목적)	5
제2조(용어의 정의)	5
제2관 보험금의 지급	6
제3조(보상하는 손해)	6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6
제5조(손해의 발생과 통지)	7
제6조(보험금의 청구)	8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	8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9
제9조(의무보험과의 관계)	9
제10조(보험금의 분담)	9
제11조(손해방지의무)	10
제12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10
제13조(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11
제14조(대위권)	11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12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	12
제16조(계약 후 알릴 의무)	12
제17조(양도)	13
제18조(사기에 의한 계약)	13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13
제19조(보험계약의 성립)	13
제20조(청약의 철회)	13
제21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14
제22조(계약의 무효)	15
제23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15
제24조(조사)	16
제25조(타인을 위한 계약)	16
제5관 보험료의 납입	17
제26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17
제27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17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17
제29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18
제30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19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의 환급 등	19
제31조(계약의 해지)	19

제32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20
제33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21
제34조(위법계약의 해지)	21
제35조(보험료의 환급)	21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22
제36조(분쟁의 조정)	22
제37조(관할법원)	23
제38조(소멸시효)	23
제39조(약관의 해석)	23
제40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23
제41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23
제42조(개인정보보호)	24
제43조(준거법)	24
제44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24
특별약관	25
사이버 금융범죄 피해 보상 특별약관	26
인터넷 직거래 사기피해 보상 특별약관	29
인터넷 쇼핑몰 사기피해 보상 추가특별약관	32
개인정보 유출 법률비용 특별약관	33
온라인 활동 중 배상책임 및 법률비용 특별약관	35
부부계약 특별약관	40
가족계약 특별약관	41
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	42
제재위반 부담보 특별약관	44
단체계약 특별약관	45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48
포괄계약 추가특별약관	50
상품다수구매자단체계약 특별약관	52
상품다수구매자단체계약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54
상품다수구매자단체계약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평균인원 기준)	56
감염병 면책 특별약관 (LMA5399)	59
특별약관 색인	60

사이버사고 보상보험

보통약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비용 및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2. 피보험자: 보험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을 말합니다.
3.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4. 일련의 손해 배상 청구: 손해 배상 청구가 이루어졌을 때, 장소 및 손해 배상 청구권자의 수 등에 관계없이 동일한 행위 또는 그 행위에 관련된 다른 행위에 기인하는 손해 배상 청구를 말합니다. 또한 일련의 손해 배상 청구는 최초의 손해 배상 청구가 이루어졌을 때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5.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에 근거하는 배상금을 말합니다. 다만, 세금, 벌금, 과료, 과태료, 과징금 및 피보험자와 타인 사이에 손해배상에 관한 특별한 약정(업무의 결과를 보증하는 것을 포함합니다)이 있는 경우에 그 약정에 의해서 가중된 손해배상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6. 소송비용: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소송(소송, 중재, 조정, 화해 등을 말합니다)에 의해 발생한 비용(피보험자 또는 그 종업원의 보수, 상여, 급여 등을 제외합니다)으로서, 필요하고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7. 보상한도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 중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에 따라 회사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 한도를 말합니다.
8. 자기부담금: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9.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나.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 보험개발원이 정기적으로 산출하여 공시하는 이율로써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 또는 보험료의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 등에 적용합니다.

10.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특별약관에 기재된 보험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동일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보험사고는, 해당 시점의 공제액 및 한도를 포함하여 하나의 보험 사고로 간주합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 이전에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이 보험사고가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의 손해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 (피보험자 종업원(근로자)의 고의를 포함합니다)
3.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5. 유형재산의 손실 또는 이로 인한 결과적 손해

6. 투자금 및 매매손실 (유가증권 포함) 관련 손해
7. 신체상해, 심리적 피해, 외상(트라우마), 질병 또는 사망
8. 특허, 상표, 저작권의 부정적 사용, 도난, 침해 및 공개로 인한 손해 및 특허의 오남용으로 인한 손해
9. 피보험자간 소송 (피보험자가 다른 피보험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으로 인한 손해
10.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을 초과하는 계약상의 책임 손해
11. 보험 사고 이전의 상태보다 향상된 조건의 개인 기기 및 스마트 홈 기기를 위하여 지불된 손해
12. 가상화폐 관련 손해
13. 도박 관련 손해
14. 통신, 인터넷 서비스, 위성, 케이블, 전기, 가스 또는 수도 공급자의 인프라 및 관련 서비스의 장애, 정전, 성능저하, 중단 관련 손해
15. 보험증권에 기재된 소급보장일자 이전에 행해진 행위에 기인하는 일련의 손해 배상 청구
16.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기인하는 손해배상 청구 및 법령에 위반된다는 것을 피보험자가 인식하면서(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행한 행위에 기인하는 손해배상 청구
17.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기인하는 손해배상 청구
18. 위 제17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제5조(손해의 발생과 통지)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 각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으며, 제1항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3.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하 '지급기일'이라 합니다)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기 간	지 급 이 자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가산이율(8.0%)

주)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 한도)

- ①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 또는 손해 배상 청구에 대해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 ② 보험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회사의 보상총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총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9조(의무보험과의 관계)

- ①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10조(보험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 ② 제1항의 의무보험은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서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가입했다라면 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제1항의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제10조(보험금의 분담)

-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계약의 보상책임액}}{\text{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 11조(손해 방지의무)

-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번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제 12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았을 때

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13조(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 ① 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말합니다.

- ③ 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하며,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④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때
- ⑤ 회사가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비율로 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합니다)의 회수청구권을 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제14조(대위권)

-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2.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제16조(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3.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17조(양도)

보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 동의를 한 경우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인 경우에는 회사의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청약서에 기재된 사업을 양도하였을 때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제18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9조(보험계약의 성립)

-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 ②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이하 '제1회 보험료 등'이라 합니다)를 받은 경우에는 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 ③ 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리며, 청약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 ④ 이미 성립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20조(청약의 철회)

-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의 경우에는 철회의사를 표시한 시점에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

약은 청약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 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 하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 철회할 수 없습니다.
- ③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 등'이라 합니다)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⑥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제21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약만 포함한 약관을 드리며,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통신판매계약】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필서명】 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④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22조(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23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5. 보상한도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한도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제35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 24조 (조사)

① 회사는 보험 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시설과 업무내용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개선을 피보험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이 계약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보험기간 중 또는 회사에서 정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피보험자에게 회계장부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고, 피보험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제 25조 (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26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②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8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2조(계약의 무효) 또는 제31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④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 신청 및 신용카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회사에 제공한 때가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가 되나,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 등이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⑤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여기에서는 타사에 가입한 계약의 갱신을 포함합니다)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장이 종료하는 때부터 적용합니다.

제27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제28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는,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 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다음의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1.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 ②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납입최고(독촉)의 통지가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도달한 날부터 시작되며,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
- ③ 회사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설정하여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5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9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5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는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8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9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6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및 제31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

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 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제15조(계약 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31조(계약의 해지) 제3항이 적용됩니다.

제30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35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3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하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통지가 7일을 지나서 도달하고 이후 피보험자가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④ 피보험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의 환급 등

제31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6조(계약 후 알릴 의무)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④ 제3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등을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손해가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32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

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5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3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35조(보험료의 환급)에 의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4조(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범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35조(보험료의 환급) 제1항 제1호에 따른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35조(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무효의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② 제1항 제2호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
2. 회사가 제18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31조(계약의 해지) 또는 제32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
3.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효력 상실

③ 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로 인하여 회사가 돌려드려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제36조(분쟁의 조정)

①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사건에 대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 37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 38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 39조(약관의 해석)

-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③ 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 40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 ①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의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또는 녹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② 설명서, 약관, 청약서 부분 및 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 ③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보험안내자료】 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

제 41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 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 42조(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 43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 44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사이버사고 보상보험

특별약관

사이버 금융범죄 피해 보상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이버 금융범죄(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와 자기 부담금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사이버 금융범죄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말하며, 피싱(Phishing), 해킹(Hacking), 스미싱(Smishing), 파밍(Pharming) 및 이와 유사한 금융사기를 포함합니다. 단, 뽀캠피싱은 제외합니다.

【피싱(Phishing)】 전화,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등을 사용해서 공공기관, 금융기관, 수사기관, 피보험자의 지인 등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나 기업이 보낸 것처럼 피보험자를 기망(欺罔), 공갈(恐喝)함으로써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과 같은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부당하게 얻거나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등의 수법을 말하며,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을 포함합니다. 단, 뽀캠피싱은 제외합니다.

【뽀캠피싱】 음란화상채팅(뽀캠)을 빌미로 영상을 불법 촬영한 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 하는 수법을 말합니다.

【개인정보】 생존하는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소,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해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가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합니다.

【스미싱(Smishing)】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등을 사용해서 첨부된 링크(인터넷 주소 등)를 클릭하게 유도하고, 악성앱이나 악성코드를 유포하여 (소액)결제를 유도하거나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을 말합니다.

【해킹(Hacking)】 전자 회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웹사이트 등 각종 정보 체계가 본래의 설계자나 관리자, 운영자가 의도하지 않은 동작을 일으키도록 하거나 주어진 권한 이상으로 정보를 열람, 복제, 변경하여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과 같은 정보를 부당하게 얻거나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등의 수법을 말합니다. 메인프레임(Main-frame), 서버(server) 등의 컴퓨터에서 발생한 해킹으로 인해 누출된 정보를 이

용하여 발생한 2차 해킹, 파밍 등을 포함합니다.

【파밍(Pharming)】 악성 코드 등을 사용해서 정상적인 홈페이지(URL)에 접속하더라도 가짜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여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을 말합니다.

③ 제1항의 재산상의 피해는 "피해금"에서 "피해환급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1. 피해금은 법원의 판결, 경찰 조사 또는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입증이 가능한 피보험자의 금전적 손실액 원금을 말하며, 아래 각 목의 금액을 포함합니다.

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에 따른 피해금

나. 피보험자의 계좌에서 자금이 부당하게 인출되어 (사기에 의한 부당 송금 및 이체를 포함합니다.) 발생한 실제 금전적 손실액

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카드,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등이 부당하게 사용되어 발생한 실제 금전적 손실액

2. 피해환급금은 아래 각 목의 금액을 포함합니다.

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에 따른 피해환급금

나. 가목 외에도 사고와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금융기관이나 제3자로부터 보상, 환급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 그 해당 금액

④ 제1항의 사고의 입증은 경찰신고서류, 경찰 또는 검찰조사기록 등 관련자료에 따릅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피해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동법 제10조(피해 환급금의 결정·지급)에 따라 피해환급금이 결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동법 제2조(정의)에 따른 피해자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금액이 없는 등의 이유로 피해구제 신청이 진행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대리인의 고의, 중과실 또는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 (공

모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범죄행위]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 및 상법 또는 독점금지법 등의 법률과 같이 특별 처벌 규정에 따른 범죄를 말합니다. 그리고 범죄행위에는 형(刑)을 받아야 하지만 집행유예 등에 의하여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시효의 완성 등에 따라 형을 받게 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합니다.

2.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명기된 손해 이외의 일체의 손해 (단, 보통약관 제11조(손해방지의무)를 위해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3. 구두 또는 문서에 의한 비방, 중상에 따른 인격권 침해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테러
 5.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친족에 의한 사고
 6. 영업비밀, 저작권, 특허권 또는 이와 유사한 지적재산권 침해
 7. 대한민국 외에서 생성된 개인정보로 인한 손해
 8. 대한민국 외에서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손해
 9. 피보험자가 입은 신체적인 상해, 질병 또는 장애, 정신적 쇼크, 정신적 고통 또는 정신 장애
 10. 피보험자가 자발적으로 제3자에게 개인정보 또는 금융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출한 경우
 11. 피보험자의 사업 또는 업무와 관련 하여 발생한 사고
 12. 차압, 구류, 몰수, 파괴 등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
 13. 보험기간 이전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손해
 14.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3항 제2호에 따라 지급받은 피해환급금
 15. 재화, 물품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금전상 피해
 16. 개인용 컴퓨터(PC) 이외의 메인프레임(Main-frame), 서버(server) 등의 컴퓨터에서 발생한 해킹(Hacking)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및 법인계좌에서 발생한 손해
- ② 보통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인터넷 직거래 사기피해 보상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중에 발생한 「인터넷 직거래 사기」로 금전상의 피해를 입어 관할경찰서에 신고하여 사기 피해가 확정되는 경우에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제 금전손실액(피해환급액은 제외합니다)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인터넷직거래 사기 사례】

1. 판매자가 돈을 받고 물품을 보내지 않은 경우

피해자는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마음에 드는 카메라를 발견하고 판매자에 연락을 취해 판매자의 통장으로 선입금하였으나 물건을 받지 못하고 연락이 두절됨

2. 판매자가 다른 물품을 보낸 경우

피해자는 중고거래 사이트의 판매자로부터 받은 택배 송장 번호를 확인한 후 입금했으나 실제로 택배로 받은 물품은 주문한 것과는 전혀 다른 쓸모 없는 물품임

3. 물품을 보냈는데 구매자로부터 돈을 못 받은 경우

피해자인 판매자가 올린 중고거래 사이트 판매 게시글에 구매의사를 밝힌 자에게 해당 물품을 택배로 보냈으나 끝내 구매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지 못함

제2조(인터넷직거래 사기 등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인터넷직거래 사기」라 함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물품거래 등에 관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온라인 직거래 사이트에 게시하여 발생한 대금 편취 사기를 말합니다. 단,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기망행위가 있더라도 피해자와 피의자가 직접 대면하여 거래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합니다.

③ 제1항에서 「물품 거래 등」이라 함은 거래대상이 적법한 것이고, 금전적으로 산정 가능하며, 확정하거나 또는 확정될 수 있는 한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단, 게임 캐릭터

및 아이템 등 인터넷 게임 과 관련하여 발생한 대금 편취 사기는 제외됩니다.

④ 제1항에서 「온라인 직거래 사이트」라 함은 중간 판매 또는 중개 업체를 통하지 않고, 각 개인(판매 또는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는 제외합니다)이 인터넷을 통해 직접 거래하는 사이트를 말합니다.

⑤ 이 특별약관에서 「실제 금전손실액」이라 함은 법원의 판결, 경찰 조사 또는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입증이 가능한 피보험자가 직접 송금한 금전손실액 원금(거래하기로 약정한 물품가격)을 말합니다. 단, 개인정보 또는 금융정보 유출로 인한 2차적인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⑥ 제5항에서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로서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소,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해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를 말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추가하여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이나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2.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 친족에 의한 사고
3. 차압, 구류, 몰수, 파괴 등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
4.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 등의 구매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5. 구매한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 저하 또는 모조품 등으로 인한 손해(단, 구매한 물품과 전혀 다른 쓸모 없는 물품이 배송된 경우는 제외)
6.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발송하는 물품 등의 구매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 또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명기된 손해 이외의 일체의 비용 또는 손해
2. 구두 또는 문서에 의한 비방, 중상에 따른 인격권 침해
3. 영업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지적재산권 침해
4. 피보험자가 입은 신체적인 상해, 질병 또는 장애, 정신적 쇼크, 정신적 고통 또는

정신 장애

5. 보험기간 이전에 발생한 사고나 손해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손해 또는 비용

제 4조(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의 청구) 및 아래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경찰서에서 발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사건발생일자, 경찰서 신고일자, 피해금액 등 사건개요가 명시되어야 함) 및 보험사고 입증 자료
2. 피의자와의 대화내용 및 게시글 캡처본 등 거래 입증 자료

제 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인터넷 쇼핑몰 사기피해 보상 추가특별약관 (인터넷 직거래 사기피해 보상 특별약관에 적용)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인터넷 직거래 사기피해 보상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지 손해)에 추가하여 피보험자가 인터넷 쇼핑몰 사기로 금전상의 피해를 입어 관할경찰서에 신고하여 사기 피해가 확정되는 경우에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제 금전손실액(피해환급액은 제외합니다)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인터넷 직거래 사기피해 보상 특별약관의 보상한도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으로 보상합니다.

제2조(인터넷 쇼핑몰 사기 등의 정의)

- ①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인터넷 쇼핑몰 사기」라 함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의 인터넷 쇼핑몰 등을 개설하고(오픈 마켓(Open Market)을 통한 판매 포함) 피보험자에게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보험자로부터 금품을 편취한 대금 편취 사기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인터넷 쇼핑몰」이라 함은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오픈 마켓」이라 함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를 위해 구축된 사이버몰을 말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을 따릅니다.

개인정보 유출 법률비용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대한민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제3자(기관, 법인, 개인 등)가 피보험자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를 유출하고 그 유출 사실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등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인정한 경우,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발생한 법률비용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정의 등)

①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로서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소,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해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를 말합니다.

② 「민감정보」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

③ 「법률비용」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및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변호사비용 및 소송비용으로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단, 소송비용확정신청 후 그 결과에 따라 소송의 상대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상기의 법률 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 부담하였을 경우 그 해당금액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추가하여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명기된 손해 이외의 일체의 금전적 손해

2. 피보험자가 자발적으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출한 경우

제 4조(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의 청구) 및 아래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제3자가 피보험자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유출에 대한 공식 인정 관련자료
2. 제3자에 대한 민사소송 관련자료

제 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온라인 활동 중 배상책임 및 법률비용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 배상책임)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온라인 활동 중 과실, 실수, 태만,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타인에게 저작권, 제목, 슬로건, 상표, 상호, 서비스 마크, 서비스 상표, 서비스명 또는 도메인명의 위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힌 경우, 보험기간중에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어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약관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② 회사가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손해방지의무' 조항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손해방지의무' 조항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보험증권상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③ 회사는 보통약관에도 불구하고 상표, 저작권의 부정적 사용, 침해 및 공개로 인한 손해는 보상합니다. 그러나 상표, 저작권의 도난 및 특허의 부정적 사용, 도난, 침해, 공개, 오남용은 어떤 경우에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⑤ 제4항 「보험기간 중에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라 함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1. 피보험자와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쪽의 손해배상청구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접수한 경우에는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는 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린 날을 손해배상 청구가 처음 제기된 날로 봅니다.

2. 어느 하나의 사고에 대한 다수의 손해배상 청구는 그 중 최초로 제기된 날을 모든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일자로 봅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 법률비용)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온라인 활동 중 사이버 명예훼손의 혐의로 피보험자가 피의자로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게 되는 사건에 대해 보험기간 중에 최초로 개시된 형사절차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하는 변호사선임비용, 소송비용 등 형사방어비용(단,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 또는 불기소 결정으로 종결되고 주문이 “혐의없음” 또는 “죄가 안됨”인 경우에 한합니다)이 발생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약관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기간 중에 최초로 개시된 형사절차」라 함은 피보험자가 수사기관으로부터 고소·고발장·진정서 접수, 입건, 출석요구 등 통지를 최초로 받은 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단, 보험증권에 기재된 소급보장일자 이전에 행해진 행위에 기인하는 형사절차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의 형사방어비용은 수사기관이 불송치 결정 또는 불기소 결정으로 종결된 사건(주문이 혐의없음 또는 죄가 안됨인 경우)의 수사가 재개되어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하며, 회사는 수사 결과의 변동에 따라 기지급된 보험금을 환수 할 수 있습니다.

④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피의사실이 다수여서 분리 결정된 경우, 회사는 제1항에서 산출한 보상책임액에서 피보험자에게 해당되는 전체 피의사실 결정건수에 대한 불송치 결정 또는 불기소 결정 중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으로 처리된 결정 건수의 비율을 아래에 따라 계산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text{보상책임액 (제1항에서 산출된 금액)} \times \frac{\text{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결정('혐의없음', '죄가안됨') 처리된 결정건수}}{\text{전체 피의사실 결정건수}}$$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대한민국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어, 무죄가 선고된 경우 피의자로서 실제 부담한 형사방어비용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내에서 피보험자에게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판결이 무죄로 선고된 경우라도 상급심(1심 소송에 대한 항소심 또는 상고심)의 판결이 유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상급심(1심 소송에 대한 항소심 또는 상고심)의 판결이 무죄로

선고된 경우에는 이전 심급 중 무죄판결 선고가 아니어서 보상받지 못하였던 피보험자가 부담한 형사방어비용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하여 드립니다. (회사는 종국 판결 결과의 변동에 따라 미지급된 보험금을 추가 지급 또는 기지급된 보험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⑦ 제1항에서 정한 변호사비용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의해 형사방어비용에 해당하는 비용을 보상받는 경우 그 보상금액을 초과하는 형사방어비용에 대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제3조(온라인 활동의 정의 등)

① 「온라인 활동」이란 웹 사이트, 소셜 미디어 또는 이메일을 통해 배포되는 모든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또는 사운드를 의미합니다. 단, 상업적 활동에 사용되는 온라인 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사이버 명예훼손」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③ 제2항에서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합니다.

제4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1조(보상하는 손해 - 배상책임) 제2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 :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2. 제1조(보상하는 손해 - 배상책임) 제2항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3. 제1조(보상하는 손해 - 배상책임) 제2항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상한도액의 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

② 보험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배상청구 및 법률비용에 대한 회사의 보상총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총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5조(보고연장보장기간의 설정 대상계약)

회사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제7조(자동보고연장보장기간)에 규정된 보고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하여 드리며, 추가보험료를 납입하면 제8조(선택보고연장보장기간)에 규정된 보고기간 연장배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1. 보험료 미납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갱신되지 않았을 경우
2. 회사가 이 보험을 배상청구 기준으로 이 보험증권상의 소급보장일자 이후의 날짜를 소급보장일자로 하는 보험으로 갱신 또는 대체했을 경우
3. 회사가 이 보험증권을 배상청구 기준이 아닌 보험으로 대체했을 경우

제6조(보고연장보장기간의 보상 특칙)

회사가 보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 - 배상책임)에 다음의 조항을 추가 적용합니다.

1. 보고연장기간 내에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는 보험기간 만료일에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소급보장일자와 보험기간 만료일 사이에 행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한합니다.
2. 보고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도 보상한도액이 복원 또는 증가되거나 보험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7조(자동보고연장보장기간)

① 자동 보고연장보장기간이라 함은 아래의 제1호 또는 제2호와 같습니다.

1.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간.
2.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간. 이 자동 보고연장보장기간은 보험증권 상의 소급보장일자부터 보험기간 만료일 이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에 회사에 통지된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이 자동 보고연장보장기간은 그 손해배상 청구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다른 보험의 보상한도액이 모두 소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3. 피보험자가 제2호에 따라 회사에 사고를 통지할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체없이 그 내용을 보통약관 제5조(손해의 발생과 통지) 제1항의 내용에 준용하여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이 자동 보고연장보장기간은 해지할 수 없습니다.

제 8조(선택보고연장보장기간)

① 선택적인 보고연장보장기간 배서가 발행된 경우 그 보고연장보장기간은 이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무기한이 됩니다. 그러나,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②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아래의 조건을 이행한 경우에는 회사는 보고 연장보장기간 배서를 발행합니다.

1.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보고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2. 소정의 납입기일에 추가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납입기일까지 추가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고연장보장기간 배서는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추가보험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었을 때에는 보고연장보장기간 배서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제 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부부계약 특별약관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

- ① 회사는 특별약관에 의해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이하 「본인」 이라 합니다) 및 법률상 배우자를 보통약관 및 이에 첨부된 당해 특별약관에 정한 피보험자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본인과 본인 이외의 가족과의 관계는 사고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가족계약 특별약관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

-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피보험자 본인(이하 「본인」이라 합니다) 및 본인의 가족을 보통약관 및 이에 첨부된 당해 특별약관에 정한 피보험자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가족이라 함은 아래의 사람을 말합니다.
 - 1. 본인의 법률상 배우자
 - 2. 본인의 법률상 자녀
 - 3. 본인의 법률상 부모
- ③ 제1항의 본인과 본인 이외의 가족과의 관계는 사고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

제1조(특약의 적용범위)

- ① 이 특약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청약하고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보험계약(이하 “전환대상계약”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을 청약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1.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
 2.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
- ② 전환대상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로 효력이 없게 된 경우 또는 전환대상계약이 제1항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③ 제2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장애인증명서상 장애예상기간(또는 장애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제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④ 이 특약의 계약자는 전환대상계약의 계약자와 동일하여야 합니다.

제2조(제출서류)

- ① 이 특약에 가입하고자 하는 계약자는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의한 장애인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이하, “장애인증명서”라 합니다)을 제출하여 제1조(특약의 적용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함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증명서·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이나 그 밖의 장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장애인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③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를 제1항 따라 회사에 제출한 때에는 그 장애기간 동안은 이를 다시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④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장애인증명서의 장애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자는 이를 회사에 알리고 변경된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조(장애인전용보험으로의 전환)

- ① 회사는 이 특약이 부가된 전환대상계약을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후부터 납입된 전환대상계약 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표시됩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당해년도에 제4조(전환 취소)에 따라 전환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에 납입한 모든 전환대상계약보험료가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2조(제출서류)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장애인증명서상 장애예상기간(또는 장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제1조(특약의 적용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④ 전환대상계약에 이 특약이 부가된 이후 제4조(전환 취소)에 따라 전환을 취소한 경우 또는 전환대상계약이 제1조(특약의 적용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 이 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해당 전환대상계약에는 이 특약을 다시 부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2조(제출서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장애인증명서상 장애예상기간(또는 장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전환대상계약이 제1조(특약의 적용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4조(전환 취소)

계약자는 전환대상계약에 대하여 장애인전용보험으로의 전환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환취소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 ①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환대상계약 약관, 소득세법 등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② 소득세법 등 관련법규가 제·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을 따릅니다.

제재위반 부담보 특별약관

보험회사는 아래의 제재에 반하는 위험의 보장, 보험금의 지급 또는 이익의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 ① UN 결의에 의한 제재, 금지, 제한사항
- ② EU, 영국 또는 미국의 무역·경제적 제재조치 또는 법률규정

단체계약 특별약관

제1조(계약의 적용 범위)

① 피보험자가 다음 중 한가지의 단체에 소속되어야 하며, 단체를 대표하여 계약자로 된 자가 단체보험 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제1종 단체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다만,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의 단체소속 여부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제2종 단체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 등 동업자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3. 제3종 단체

그밖에 단체의 구성원을 확정시킬 수 있고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② 제1항의 대상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동일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5인 이상의 피보험자로 피보험단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단체의 내규에 의한 복지제도로써 노사합의에 의하며, 보험료의 일부를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단체는 내규에 의해 단체의 대표자와 보험회사가 협정에 의해 체결하여야 합니다.

제2조(상법 제 735조3의 적용)

① 제1조의 단체가 피보험자를 확정할 수 있고 계약의 일괄적 관리가 가능하며, 규약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며, 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드릴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약은 보험의 종류 및 일괄 가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동의 또는 협의를 통하여 피보험자들의 의사가 규약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보험수익자를 계약자 등 피보험자의 이해에 반하는 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규약

에 반영되어야 하며,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③ 보험회사는 계약자를 통해 단체의 규약이 제2항을 충족하고 있는 지 확인을 해야 하며, 계약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단체요율의 적용)

① 제1조의 단체는 단체요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종 단체는 구성원이 명확하고 위험의 동질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②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대상단체의 위험과 피보험단체의 위험의 동질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제4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을 증가, 감소 또는 교체코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이 계약기간 중 보험의 목적 감소의 경우는 당해 보험의 목적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보험의 목적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보험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또는 환급보험료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해당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라 보험의 목적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보험의 목적 교체 전 계약과 동일한 보장조건 및 인수기준에 따라 가입될 수 있으며, 보험의 목적 교체시점부터 잔여 보험기간(보험의 목적 교체 전 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5조(개별계약으로의 전환)

① 피보험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단체에서 탈퇴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에 한하여 탈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개별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보험자는 개별계약의 계약자가 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별계약으로 전환 시에는 전환 후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또는 환급되는 보험료는 보험료 및 해

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제6조(보험증권의 발급)

- ① 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증권을 드려야 하고, 그 약관의 주요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② 보험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별 피보험자에게는 가입증명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제7조(적용상의 특칙)

계약자가 아닌 단체의 소속원이 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원이 계약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단체계약 특별약관에 적용)

제1조(보험료의 정산)

- ① 회사는 단체계약 특별약관 제4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 ② 회사는 단체계약 특별약관 제4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3항과 관계 없이 보험료가 정산되기 이전 일지라도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된 피보험자에 대해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피보험자의 명부)

계약자는 항상 피보험자 명부를 비치하여 회사가 열람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제3조(보험료의 정산방법)

보험료는 피보험자수의 증감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1. 계약자는 매월 10일까지 전월 말까지의 피보험자수에 관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이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효력상실 또는 해지 일까지의 보험료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효력상실 또는 해지 즉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보험기간 중이나 보험기간 만료 후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보험기간 만료와 동시에 제1호에 의한 피보험자수에 따라 산출된 확정보험료와 기납입한 보험료를 비교하여 그 차액을 정산합니다.
4.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와 협의를 통해 피보험자수에 관한 서류 제출 주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4조(보험기간의 설정)

회사는 단체계약 특별약관 제4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계약자가 요청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계약기간 중 피보험자 감소의 경우 피보험자가 소속단체를 탈퇴(퇴사)하는 즉시 당해 피보험자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합니다.

제 5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을 따릅니다.

포괄계약 추가특별약관
(단체계약 특별약관에 적용)

제1조(적용특칙)

- ① 이 추가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을 첨부한 경우에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는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 ② 보험료의 정산을 전제로 회사는 보험료 정산 전에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된 피보험자에 대해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험료정산기간)

- ① 계약자와 회사는 보험증권에 정한 기간 (이하 「정산기간」이라 합니다)마다 보험료를 정산하기로 합니다.
- ② 정산기간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정하여 보험증권에 기재합니다.
 - 매월, 매분기, 매반기, 기타()
 - 보험기간 종료 후

제3조(예치보험료)

-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하는 피보험자의 수에 기초하여 연간 예상되는 보험료(이하 「예상보험료」라 합니다)를 계산합니다. 다만,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정산기간 단위로 예상보험료를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 ② 계약자는 계약할 때에 제1항의 예상보험료를 예치보험료로 회사에 납입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의 단서의 경우에는 해당 정산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해당 예치보험료를 회사에 납입해야 합니다.

제4조(보험료의 정산)

- ① 계약자는 정산기간 종료 후 5일 이내에 정산기간 종료 시점의 피보험자 수를 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5일 이내에 정산기간에 해당하는 확정보험료를 산출하여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확정보험료가 예치보험료보다 작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제2항의 통지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반대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차액을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④ 제1항 내지 제2항의 통지는 서면(전자적 수단을 포함합니다)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5조(자료의 제출 및 열람)

- ① 계약자는 계약이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효력상실 또는 해지일까지의 보험료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효력상실 또는 해지 즉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② 회사는 보험기간 중이나 보험기간 만료 후 1년 이내에는 보험료 계산에 필요한 경우에 계약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상품다수구매자단체계약 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 ① 이 상품다수구매자단체계약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 이라 합니다)은 상품판매자가 자기의 관리 하에 운영·유지되는 상품의 다수구매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의 상품의 다수구매자란 각종 재화, 용역 및 서비스의 구매자를 말합니다.
- ③ 제1항의 단체의 총 피보험자 수는 50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2조(계약자)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는 제1조(적용범위)의 단체를 대표하여 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3조(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 ①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를 증가, 감소 또는 교체코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② 이 계약기간 중 피보험자 감소의 경우는 당해 피보험자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보험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또는 환급보험료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단,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을 각기 달리하여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 회사는 계약사항을 고려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해당피보험자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4조(보상한도액)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보상한도액을 각기 달리하여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 회사는 계약사항을 고려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제5조(보험료의 환급)

- ①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5조(보험료의 환

급)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년 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을 돌려 드립니다.

제 6조(적용상의 특칙)

회사는 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제 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상품다수구매자단체계약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상품다수구매자단체계약 특별약관에 적용)

제1조(보험료의 정산)

- ① 회사는 상품다수구매자단체계약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3조의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 ② 회사는 특별약관 제3조의 제3항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정산되기 이전일지라도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된 피보험자에 대해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며, 단체 소속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피보험자에 대해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2조(피보험자의 명부)

계약자는 항상 피보험자 명부를 비치하여 회사가 열람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제3조(보험료 정산기간)

계약자는 매월, 매6개월, 또는 기타 회사가 승인한 기간 중 어느 하나의 것으로 보험료를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이 기간을 보험료정산기간 (이하 「정산기간」이라 합니다)이라 합니다.

제4조(예치보험료)

계약자는 제3조(보험료 정산기간)의 매 정산기간이 시작될 때 마다 정산기간 동안의 예상 피보험자수와 예상 보험목적에 대하여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보험료(이하 「예치보험료」라 합니다)를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5조(보험료의 정산방법)

보험료는 피보험자수의 증감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1. 계약자는 정산기간 만료 후 익월 10일(또는 계약체결 시 계약자와 회사가 약정한 날) 이전에 전월 말까지의 피보험자수에 관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이 효력 상실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효력 상실 또는 해지일까지의 보험료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효력 상실 또는 해지 즉시 회사에 제출하

여야 합니다.

2. 회사는 보험기간 중이나 보험기간 만료 후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보험기간 만료와 동시에 위 1.에 의한 피보험자수에 따라 산출된 확정보험료와 예치보험료를 비교하여 그 차액을 정산합니다.

제 6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상품다수구매자단체계약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평균인원 기준)

(상품다수구매자단체계약 특별약관에 적용)

제1조(보험료의 정산)

회사는 상품다수구매자단체계약 특별약관 제3조(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제2조(계약의 적용범위)

상품다수구매자단체계약 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에도 불구하고, 계약자는 증권에 계약자로 기재된 상품판매자로, 서비스 회원과 제휴계약을 맺고 그 제휴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합니다.

제3조(보험가입금액)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가입금액을 각기 달리하여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 회사는 계약사항을 고려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제4조(피보험자의 통지)

① 계약자는 피보험자의 증감이 있을 경우 아래에 정한 양식으로 회사에 서면(팩시밀리 포함합니다) 통지하여야 합니다.

피보험자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품구입일	날인

② 회사의 보장은 제1항의 통지가 회사에 접수되는 시점으로 하며 우편통지시 그 통지가 지연된 경우에는 우체국 소인이 찍힌 날로부터 3일이 지나면 회사에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자기의 재화, 용역 및 서비스를 판매한 날짜 및 시간이 입력된 전산자료를 회사에 제공할 수 있을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의 기간단위로 피보험자 증감내역을 통보합니다.

- 매월 , 기타 ()

제5조(보험료 정산기간)

계약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것으로 보험료를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이 기간을 보험료정산기간 (이하 「정산기간」이라 합니다)이라 합니다.

1. 계약 기간 중
 - 매월 , - 기타 ()
2. 보험기간 종료 후

제6조(예치보험료)

보험계약자는 제5조(보험료 정산기간)의 매 정산기간이 시작될 때마다 정산기간 동안의 예상피보험자수에 정해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보험료 (이하 「예치보험료」라 합니다)를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7조(보험료의 정산방법)

① 회사는 계약자로부터 정산기간 동안의 피보험자 수를 통지받아 매 정산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실제보험료를 아래와 같이 산출한 후 위 제6조의 예치보험료와의 차액을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frac{(\text{정산기간 시작일 피보험자수} + \text{정산기간 종료일 피보험자 수})}{2} \times \text{1인당 보험료}$$

- ② 계약이 효력상실 또는 해지 되는 경우, 효력상실일 또는 해지일을 제1항의 '정산기간 종료일'로 하여 실제보험료를 산출합니다.
- ③ 계약이 효력상실 또는 해지되는 경우, 계약자는 보험료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효력상실 또는 해지 즉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④ 회사는 보험기간중이나 보험기간 만료후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⑤ 회사는 보험료가 정산되기 이전일지라도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된 피보험자에 대해 생긴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8조(보험기간의 설정)

회사는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보험계약자가 요청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단, 이 계약기간 중 피보험자 감소의 경우 당해 피보험자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합니다.

제 9조(적용특칙)

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제 10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을 따릅니다.

감염병 면책 특별약관 (LMA5399)

본 특별조항은 보통약관 및 여타의 특별약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합니다.

감염병 면책

보험사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제조건·제규정에 불구하고, 감염병 또는 감염병에 대한 (실제 또는 인식된) 공포 및 위협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야기, 기여, 기인되거나 원인 또는 연관이 되어 발생하는 모든 실제 또는 추정 손실, 배상책임, 피해보상, 상해, 병, 질병, 사망, 의료 비용, 방어 비용, 일반 비용, 경비 또는 기타 비용은 본 계약의 보상 범위에서 제외되며, 그러한 손실 등의 발생에 기여하는 다른 원인이 동시에 혹은 어떠한 순서에 따라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외됩니다.

감염병이란 어느 한 유기체에서 다른 유기체로 어떠한 물질 또는 매개체를 통해 전파되는 모든 질병을 의미하며 아래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1. 해당 물질 또는 매개체에는 바이러스, 박테리아, 기생충 또는 기타 유기체나 그 변종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으며, 살아있다고 인식되는지 여부는 불문합니다.
2. 직간접적으로 전파되는 형태에는 공기 중 전염, 체액을 통한 전염, 물체의 표면 또는 고체, 액체, 기체 등의 물체를 통한 전염, 또는 유기체 간의 전염 등이 포함되며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3. 해당 질병, 전염 물질 또는 매개체가 신체 상해, 질환 및 정신적 피해 또는 인간의 건강과 안위에 대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그러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이 되는 경우 또는 재물의 피해를 야기하거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이 되는 경우

특별약관 색인

<기호 및 숫자>

해당없음

<ㄱ>

가족계약 특별약관	41
감염병 면책 특별약관 (LMA5399)	59
개인정보 유출 법률비용 특별약관	33

<ㄴ>

해당없음

<ㄷ>

단체계약 특별약관	45
-----------------	----

<ㄹ>

해당없음

<ㅁ>

해당없음

<ㅂ>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48
부부계약 특별약관	40

<ㅅ>

사이버 금융범죄 피해 보상 특별약관	26
상품다수구매자단체계약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54
상품다수구매자단체계약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평균인원 기준)	56
상품다수구매자단체계약 특별약관	52

<ㅇ>

온라인 활동 중 배상책임 및 법률비용 특별약관	35
인터넷 쇼핑물 사기피해 보상 추가특별약관	32
인터넷 직거래 사기피해 보상 특별약관	29

<ㅈ>

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	42
제재위반 부담보 특별약관	44

<㉗>

해당없음

<㉘>

해당없음

<㉙>

해당없음

<㉚>

포괄 계약 추가특별약관50

<㉛>

해당없음

삼성화재 전국 고객지원센터 주소

지역	부서명	주소	전화번호
서울	강북고객 지원센터	[0256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168. 삼성화재 청량리사옥 2층 (용두동)	1588-5114
	강남고객 지원센터	[0623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44. 삼성화재 역삼빌딩 12층 (역삼동)	
	강서고객 지원센터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 76. 삼성화재 영등포사옥 1층 (양평동 4가)	
경기	경기고객 지원센터	[16489]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205. 삼성화재 수원사옥 3층 (인계동)	
대전	충청고객 지원센터	[35209]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55. 삼성생명 10층 (둔산동)	
광주	호남고객 지원센터	[61964]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30. 삼성화재 상무사옥 1층 (치평동)	
대구	대구고객 지원센터	[42012]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401. 삼성화재 대구사옥 3층 (범어동)	
부산	부산고객 지원센터	[48821]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184. 삼성화재 부산초량사옥 2층 (초량동)	

※ 전국 고객지원센터의 전화번호 및 주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확인 후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사고 통보 및 접수는 삼성화재 콜센터 (1588-5114) 혹은 홈페이지 (www.samsungfire.com) 보험금 청구 (사고접수)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Samsung

Financial Networks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4
1588-5114 | samsungfire.com